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2015. 7

목 차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2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28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63
V.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74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80
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86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비교	109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추진배경

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 2005년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4년까지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재정 지원
 - * 종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중 **정신요양,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사업(3개)**은 국고 지원으로 환원되고, 그 외 지방이양사업은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원
- 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거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발굴·연계기능이 중요한 지자체의 과제로 부각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 특히, '12.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의 중요성 부각**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가 마련됨**

나. 지역사회보장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기존에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partnership)이 긴요하며, 이는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
 - * 사회보장영역의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 대두**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

다.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의 절실성

- 지역공동체란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의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접근 방법
- * 지역의제 발굴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수요자에게 최대한 제공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
-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
- 그 결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의 가능성 대두, 다만 그러한 가능성도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인식전환을 통해서만 가능
-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보장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
 - *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분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협력기반 마련이 중요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변화 =

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5.1.1. ~ 6.3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7.1.부터 시행)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범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영역 확대
연계 체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
협의체 구성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	위원 수 확대(10명 이상 40명 이하)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
협의체 운영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보장기관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협의체 기능	-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심의·자문/연계·협력 기능 - 심의·자문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등
경과 조치		'15.7.1.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로 간주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가. 목적

-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실무자들의 복지문제 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 지역내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 셋째,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구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
<p>협의체 구성</p>	<p>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p> <p>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p>-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p>- 실무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p>협의체 기능</p>	<p>- 심의·자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 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읍·면·동별 10명 이상 •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비교

구 분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 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위원 자격요건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 비영리법인/단체 대표자 - 수급권자 이익 대표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가 임명/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분야 전문적 지식/경험자 - 사회보장 관련기관/단체 대표자 - 사회보장대상자의 이익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좌동
위원 임기	2년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위원은 지자체 조례로 연임여부 규정
위원회 조직/운영	해당 시·도 조례로 위임 규정	- 회의소집, 의사(결)정족수 보완 - 해당 시·도 조례로 위임 규정
비 고	- 17개 위원회, 위원 336명 구성 - 연간 4-5회 이내 회의('14년 81회)	
명 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및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구 분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공익단체 추천자 -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임명직/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 임기	2년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제한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 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 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읍·면·동별 10명 이상), 읍·면·동장과 민간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협의체/ 실무협의체 조직운영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비 고	-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급 상근 직원 배치('14년, 200명)	-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구성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구 분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복지위원	복지위원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상담 - 사회보장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회보장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처우수준	명예직,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가능	명예직,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 읍·면·동별로 2명 이상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 읍·면·동별로 2명 이상
위원 임기	3년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비 고	- 3,224개 읍·면·동, 18,622명의 복지위원 위촉·활동('14년)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원칙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고유)사업도 병행 추진**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 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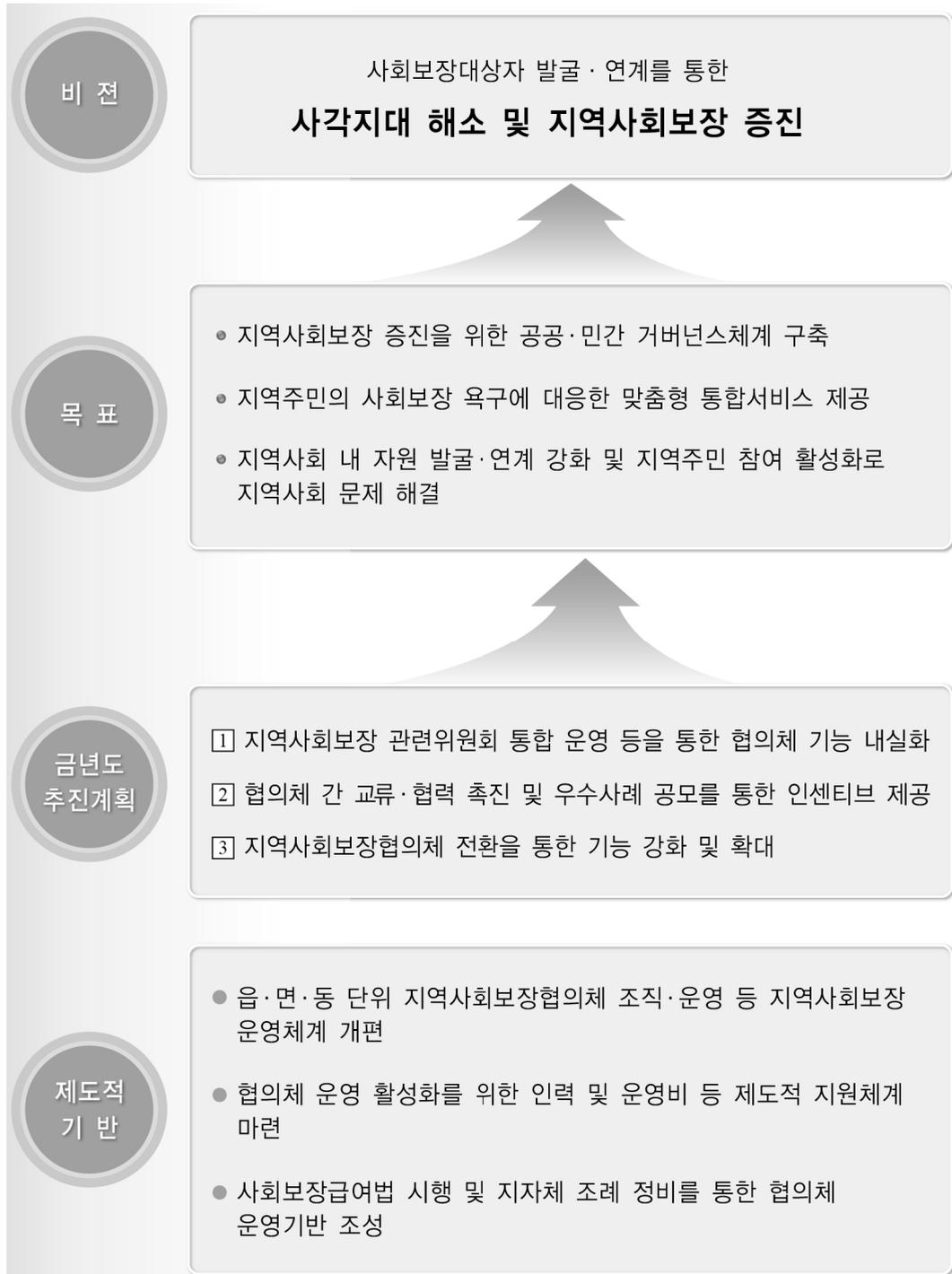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라.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 대표협의체 구성·운영

가. 구성 원칙

- **대표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이해 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 *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이용자 대표, 공익 대표 등
- **포괄성** :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보장분야 및 관련 분야의 구성 주체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를 망라하여 구성
- **민주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관련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 대표 등 세 영역별 주체들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
 - * 지역사회보장 구성주체 : 공공부문·민간부문·이용자
- (위원 수)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위원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 * (종전) 사회복지 → ('15.7.1. 이후 사회복지급여법 시행) 사회복지분야의 영역 확대를 고려, 위원 구성인원 증가

(1) 공공부문 대표위원

- 공공부문 대표위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 범위 내에서 구성
- 공공부문 대표위원은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회보장 관련분야 공공기관의 대표들로 구성
 - * 사회복지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등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민간부문 대표위원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 실무협의체에서 추천한 자 등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위촉
 -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 복지자원이 충분한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위원을 확보하고, 자원이 적은 지역은 전문가 중심으로 대표위원 구성이 가능
 - ※ 기관 중심 대표위원의 선출의 경우는 해촉·사퇴 시 해당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직을 승계하고, 전문가의 경우는 해당 전문 분야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함.(위촉방식은 대표협의체에서 논의)

(3) 이용자 대표위원

- 이용자를 대표하는 대표협의체 위원은 공모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장이 위촉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 이내로 구성
- 이용자 대표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
- 위원 공모 결과, 이용자 대표위원 응모자가 부족할 경우, 대표협의체 논의를 거쳐 위원장(공공, 민간)의 추천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지자체의 장이 위촉

(4) 기타 연계 영역

- 위원 위촉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가능
 - (예) 공단지역의 고용·이주민 관련, 농촌지역의 영농사업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대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촉한다.

(5)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결격사유 해당유무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반드시 결격사유 해당유무를 조회·확인
 - * 위원 임기 만료 후 동일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도 결격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

○ 위원 임명 또는 위촉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대표협의체 구성(예시) =

임명직 위원	지자체 대표	시·군·구 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선출직 포함)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위촉직 위원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 이용시설의 대표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대표 -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분류 참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 보건, 지역사회보장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 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 대표협의체 운영상 직원의 역할(권고안)

- 대표협의체 회의 운영과 실무협의체 주요 의제를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유지
-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대표협의체에 보고
-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의결체계인 대표협의체에 종속되지 않도록 양 협의체간 연석회의 개최 등 협의절차 이행

다.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연임여부는 지역특성, 인적 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함
단,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사퇴·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위원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라.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임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토록 함
 - *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지자체 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권고
 -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이 궐위된 경우는 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함
- 사퇴·해촉 등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위원장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함

마. 회의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연 3회 이상 개최 권고)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음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4.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의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등

= 시·군·구 복지분야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 현황 =

위원회명	근 거	기 능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30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20조 단서조항> </div>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 단서조항> </div>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 단서조항> </div>
지역아동 빈곤예방 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제10조 단서조항 > </div>

위원회명	근 거	기 능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지원 연장결정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 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 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12조 제4항 > </div>
자활기관 협의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평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관리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
노숙인 입소·퇴소 심사위원회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 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 강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 심의

2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가. 구성의 원칙

- 포괄성 :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구성 주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문성 :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나. 위원 구성 및 선출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포괄성·전문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사회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이 많은 각 영역의 종사자 중에서 민주적 절차·방법으로 선출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1) 공공부문 위원

- 공공부문 실무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3 범위 내에서 구성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로 등 사회보장분야 담당부서 및 각 분야의 담당 팀장을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 그 외 관련분야 공공부문 실무위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음

(2) 민간부문 위원

- 민간부문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전체 위원의 2/3 범위 내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민간부문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해당 부문의 실무분과장으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음
- 민간부문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이용·생활(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보건의료·주거·고용·교육 등 관련 법인·시설·단체의 중간관리자급 실무자 수준으로 구성

(3) 기타 관련분야 영역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자원·서비스 발굴·연계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을 기타 관련분야 영역의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을 관련분야의 위원으로 위촉 가능
- * 관련분야 영역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경제단체, 지역기반 기업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실무협의체 구성(예시) =

-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 소관업무 담당 팀장, 보건소담당 팀장 등
-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중간관리자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 등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
-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익단체(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사회복지협회의 실무자 등
- 기타 : 주민조직(부녀회, 자원봉사회 등) 지역복지에 필요한 자원·서비스 발굴·연계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사람
 - ※ 협의체 직원(상근간사 등)은 협의체 간의 연계기능

다. 위원 임기

-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연임여부는 지역특성, 인적 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함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라. 위원장의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겸하여 활동할 수 있음

마. 회의 운영

- 실무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연 4회 이상 개최 권고)
- 회의 안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서비스 조정·연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요
 -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사업 논의, 분과 공동사업 논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원 조정·연계, 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추진사항 등
-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장은 회의 소집시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실무분과 구성·운영

가.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함
- *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실무분과 구성

(1) 공공부문 위원

- 사회복지 및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관련분야 실무분과 위원 역할 수행
 - 해당 분과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과 동일
- * 예) 보육팀장-아동분과 실무위원, 노인팀장-노인분과 실무위원

(2) 민간부문 위원

-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중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대변하는 서비스 공급자로 구성하고, 일선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로 구성
- 실무분과 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 시설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존 실무분과 위원의 추천과 합의에 의해 해당 분야 위원이 될 수 있고, 이·통·반장, 부녀회장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그 직을 수행하는 기간만 실무분과 위원으로 활동
- 민간기관의 실무자는 소속기관의 인사로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 관련업무 수행 시부터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으로 활동
 - 인사/업무분장으로 업무 변경 시, 해당 분과 위원으로 활동

(3) 기타 관련분야 영역

- 고용, 교육, 주거,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등 사회보장 관련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 구성 가능

다.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 실무분과의 구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초를 제공
- 구성형태는 지역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 각 실무분과의 위원수는 지역사정에 따라 협의체 내의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1) 대상별 분과

-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특성별 욕구**에 대응한 실무분과를 구성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영역을 고려한 대상별 분과를 설치 운영 가능 (예, 다문화가족 분과 등)

(2) 지역별 분과

- 농어촌 등 사회보장분야별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별 분과 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소생활권** 단위의 분과 구성이 가능
- 산악권 도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 대상별, 기능별 분과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소생활권 형태의 지역단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지역 실무분과를 구성·운영**

(3) 기능별 분과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분과 구성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분과형성이 가능하며 T/F 형태의 구성도 가능
-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 분과’**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분과 운영을 위하여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의 분과 등을 구성 가능

라. 회의 운영

-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소집 가능
- 실무분과 회의는 분과별 추진사업 관련 사항 및 대표/실무협의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통합사례관리 등이 필요할 경우에 지자체 조례 또는 협의체 내부 규정에 따라 개최(연 6회 이상 개최 권고)

참고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 2014년도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14.1.1~'14.12.31)

○ 구성 현황

구 분	시·군·구 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분과수	참여인원
계	229	229	4,643	228	4,862	227	1,915	17,821

○ 참여인원 현황

구 분	합계 (명)	학 계 전문가	복지사업 기관단체대표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관 계 공무원	기타(기업인, 종교인 등)
대표협의체	4,643	324	1,635	432	686	858	708
실무협의체	4,862	78	1,854	255	448	1,522	705

○ 업무추진현황

(단위 : 건)

합 계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사회복지사업 중요사항 심의, 건의 건수	연구, 조사, 제도개선 실적 건수	서비스연계(사례관리) 및 조성 실적 건수	교육·훈련, 세미나 등 실적 건수
113,173	3,820	885	106,689	1,779

○ 상근간사 배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시·군·구 수	상근간사 현황		예산 현황			
		배치(인원)	미배치	소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합 계	229	172(200)	57	12,669	2,758	4,698	5,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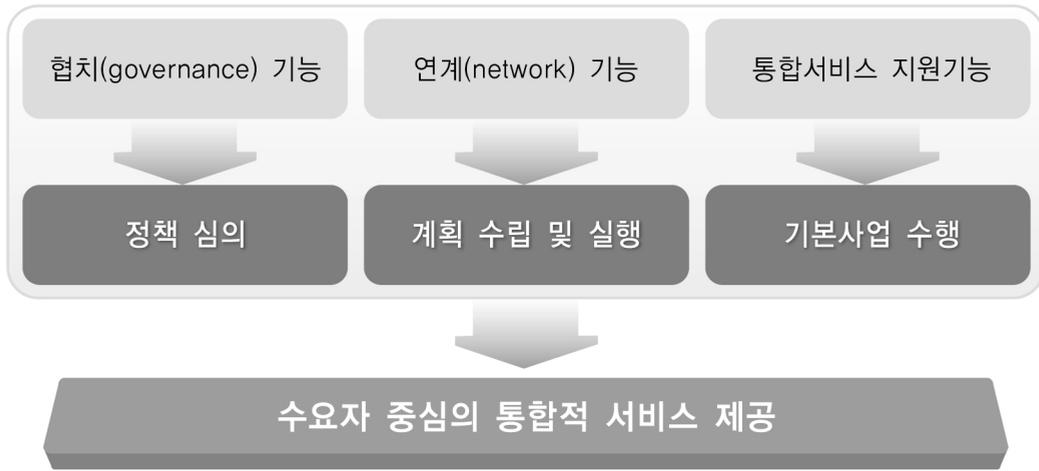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 현황(위원 수)

시·도	2012년(12.31기준)			2013년(12.31기준)			2014년(12.31기준)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계	4,595	4,752	16,327	4,695	4,776	16,896	4,643	4,862	17,821
서울	530	540	2,396	522	522	2,423	527	552	2,970
부산	298	281	874	305	283	879	307	301	785
대구	178	182	486	184	193	536	176	194	579
인천	212	201	605	205	209	662	183	196	639
광주	131	132	453	133	130	510	131	127	569
대전	88	91	237	91	95	220	97	99	219
울산	108	124	469	109	126	459	107	124	439
세종	28	24	84	30	24	107	20	0	106
경기	716	744	3,295	720	745	3,424	715	752	3,606
강원	360	353	1,009	357	359	1,127	356	361	1,186
충북	226	263	1,155	235	228	1,097	221	247	1,193
충남	287	298	1,043	315	322	1,099	312	330	1,184
전북	251	268	756	244	256	718	253	265	800
전남	389	437	1,148	406	436	944	395	439	907
경북	403	401	1,167	428	433	1,344	432	441	1,290
경남	344	359	954	363	360	1,150	364	378	1,328
제주	46	54	196	48	55	197	47	56	201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가. 주요 기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서비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협치는 주로 대표협의체의 역할이지만, 실제 의제를 개발하고 사업 수행시에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추진

나. 주요 역할

주체별	역 할
대표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자문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위원회 운영)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기능 수행(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사업별 심의를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 심의기능 대신 수행)
실무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및 지자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 시·군·구 역할(예시) =

-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 방향 제시
- 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성과 관련 수시·정기보고 접수, 평가 및 환류 조치
-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
-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원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예시) =

기 능	주 요 내 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설계·실시·조사결과 등을 심의 - 지역사회보장의 실태와 계획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치 설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예시) 개별법령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국고보조사업 포함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방향,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원방안, 대표/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연계방안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 설치목적 범위내에서 -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예시) =

기능구분	주요내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 정책 및 사업 심의	상위계획 (의무계획) 심의	심의·자문권		
	지역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업계획 심의/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사항 - 실무협의체를 통해 만들어진 수렴의견 개선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분과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 사회보장 대상자별 사업별로 사례 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실무분과)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좌 동	
	지역사회 보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 설계·실시 및 조사결과 처리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사항 - 시·군·구청장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 동	

기능구분	주요내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조사	지역사회 보장조사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자원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설계·조사 실시·조사결과 처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	
	사업결정 협의	사회보장급여 간 연계 조정 및 개선	건의	건의
	시행결과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 정의 적정성에 대한 모 니터링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 분야별/기능별 실행과정 점검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건의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주기능	민관 또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의된 사업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 사례관리 사업 지원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시행과정 모 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별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자원 연계사업	- 사회보장 분야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사회보장 분야 연계 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 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사회복지, 보건 의료 및 관련영역 등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분야별 정보 공유 및 안건 검토 - 사회보장 분야별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사회보장 분야별 관련기관· 법인·시설·단체 간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분야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및 복지 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
	기관 간 연계 및 조직화 사업	- 사회보장 관련기관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 방안 논의	- 관련영역 기관 등의 역할 분담 조정	- 지역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법인이사 추천	본 지침의 96-102쪽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지자체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기타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 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가. 회의

- 지역사회내 한정된 복지자원으로 다양한 사회보장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양과 범위의 조정,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신규 서비스 제공 기획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연계 및 조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필요
- 이러한 과정은 통상 회의를 통한 공개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므로 효율적 회의 진행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제 설정과 의사결정 과정은 협의체 운영의 중요한 요소

(1) 주요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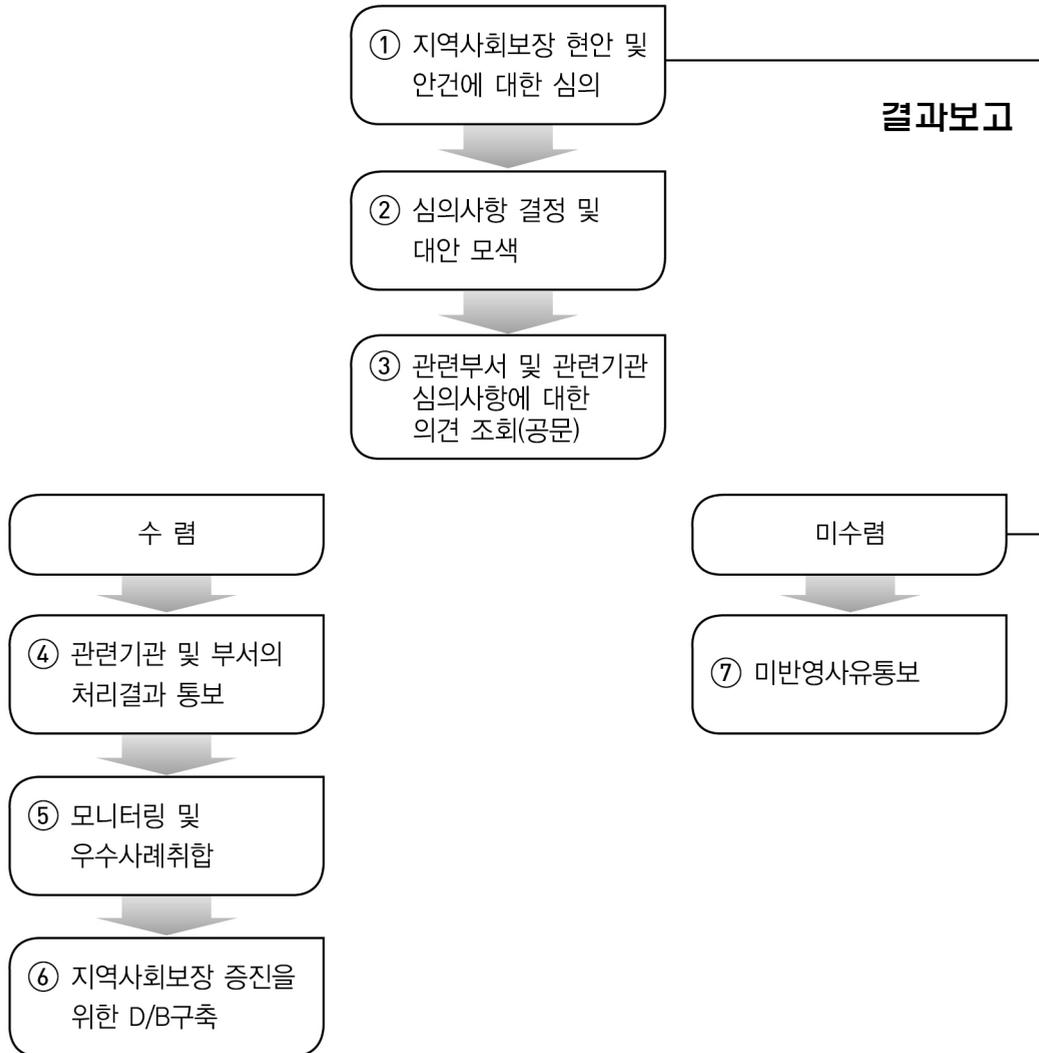
- 협의체의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해당하는 것
 -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획, 사업수행, 평가과정에서의 합의·결정사항
 - 둘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와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계측 및 목표치 설정에 관한 심의
 - 셋째,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주요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개발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음
- * (심의사항) 종전 지역사회복지계획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긴급복지 지원·자활지원계획 수립·사회복지기금 운용·자체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 전 범위로 확대 되는 추세(일부 지자체)
- 대표협의체는 심의안건을 주로 다루며,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심의안건과 관련된 분과 간 갈등 및 문제점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영역
 - 중앙 및 시·도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안건
 - 지역사회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요구 되는 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집단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등)

(2)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 지역사회보장 문제 해결이나 기존 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 기획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와 그에 따른 대안의 비교·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결정 불가능
- 의사결정은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의 개발, 각 대안 선택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효과 등에 대한 확인 필요
- 우선순위/대안들의 결정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 획득을 통해 편견 등 비합리적인 영향력 개입을 최소화
- 합리적인 대안 선택이나 우선순위 설정은 자원할당·서비스 조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합리성·신뢰성을 제고하여 정치적 압력 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자원낭비 방지

나. 안건 처리과정(예시)



①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

-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협의체 안건과 의제는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를 통해 논의
-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자원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 단계별 회의 시 검토 및 논의되는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② 심의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 및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 실무분과 제안,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제안사항)에 대해 근거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단계

③ 심의안건에 대한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의견 조회

-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안건 및 의제 처리과정의 근거를 남기고 정당성을 확보
- ※ 안건 및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자료화하여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욕구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축적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④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에서 수렴(수용)되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관련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 실시

⑤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
- 또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⑥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축적(DB 구축)

- 모든 안건·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화(DB구축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⑦ 미반영 사유통보

- 관계부서(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받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에 결과보고
- 또한 의견 미반영 사유와 그 과정을 자료화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D/B화)

다. 그 밖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인감증명, 조례, 운영규정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심사 후 고유번호증이 발급됨(법인이 아닌 단체로 간주)
- 고유번호증의 기관명은 000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대표자 이름은 민간 공동위원장의 명의로 함

(2)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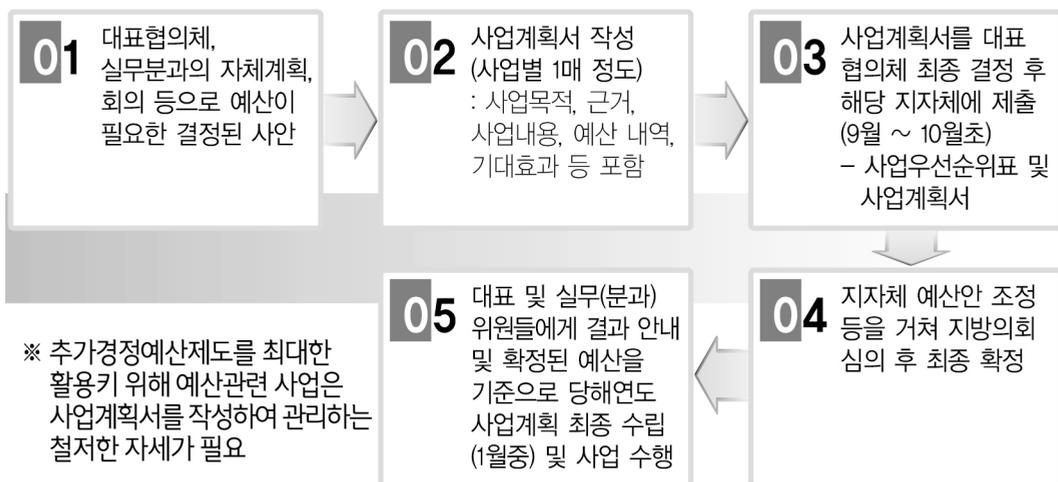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

○ 예산편성

- 지자체의 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위탁금 등의 항목으로 계상
- 편성사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단위사업으로 규정
- ※ 기타 다른 사업명의 지출 가능한 과목으로 편성 가능

= 예산편성 흐름도(예시) =



- 예산요구 및 편성서식은 시·군·구별로 기존 서식을 활용하여 관련 팀이나 예산 담당 부서와 자료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
- 익년도 예산요구 자료는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 9~10월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요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시 논의 내용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리·관리하여 추경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사업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 집행은 반드시 협의체 소속 직원(이하 ‘직원’으로 칭함)가 지출해야 하며, 실무분과에 사업관련 결과보고서와 자료제출을 요청함
- 2개 이상 실무분과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업진행은 실무분과장에게 모두 맡기되, 예산 집행은 협의체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예 : 정책토론회, 민·관협력 사업 등)
- ※ 직원은 수시로 사업진행과정을 체크하여야 하며,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직원은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 최종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받아야 함

(3)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 사업비 교부신청은 연초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사업비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청·정산
- 사업비 집행
 - 협의체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통장(계좌)을 개설하여 비용 지출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수입과 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수입·지출결의 한 후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함
 - 특히, 지출내역은 6하 원칙에 맞추어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 후 지출함이 원칙
 - 예산집행시 법인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법인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첨부),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정산은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 및 사업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하고, 집행 및 정산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함

(4) 장부의 비치

장 부 명	비고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종사자채용 관련서류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서식 준용
사업관련 자료철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협의체 운영 관련 및 일반사무 관련 철	

(5) 그 밖의 사항

- 사무실 운영 및 사무기와 관련된 사항 등은 해당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권한 및 용도 등을 결정하여 운영
 - ※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지역여건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정하거나 지자체의 장(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음

라. 협의체 소속 직원 채용 및 배치

(1) 직원의 선발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보장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와 협의체 참여 사회보장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의 협의체 운영여건에 상근의 유급직원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음

* '14.12월 말 기준 229개 지자체중 172개 지자체에 200명의 직원 배치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시·군·구수(A)	232	232	232	230	230	230	230	229
배치 시·군(B)	51	46	73	93	126	151	160	172
배치인원	55	53	81	104	142	172	183	200
배치율(%)	21.9	19.8	31.4	40.4	54.7	65.6	69.5	75.1

(2) 직원의 역할

①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지원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
- 지역사회 복지자원 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 협의체 설치 목적 범위 내 자체 사업 수행
- 지자체의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분과 간 업무 조정·연계 및 모니터링활동
-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 지역사회 보건·복지 등 사회보장분야 네트워크체계 구축

③ 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 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 협의체의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관리
- 협의체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안내,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 협의체 기능 수행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④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3) 직원의 자격요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직원으로 선발하여 관련업무 처리를 수행

- 자격요건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 후 현장 경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사회복지 현장경험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①,②와 동등한 자격 이상으로 인정되는 자

※ <참고> ③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함

- ①, ② 항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소지하고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1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정한 채용기준 등을 적용함

(4) 직원의 신분 및 처우수준

○ 직원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별도 지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존 직원 중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시적 업무처리를 요건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 유도
- 신규채용 직원 :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 직원의 자격, 업무내용 등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함

-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하며, 초임 급여수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7급 3호봉(전임경력관 나~다급) 또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의 보수수준을 적용하며, 매년 1호봉씩 가산할 수 있음

* 직원의 신분을 고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관련,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기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상근간사 경력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의 경력인정 범위에 따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함
 ※ '12.1.1. 이전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등을 참조 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직원의 봉급 및 호봉획정,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5) 직원의 채용방식

- 직원의 채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공개 채용시 지자체 홈페이지, 협의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채용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에 지자체의 채용규정 등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 기존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상근 직원으로 전환하여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공채채용을 원칙으로 함

(6) 복무규정

- 직원의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 * 다만,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시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포함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

(7) 직원의 업무처리 결재과정

- 결재는 직원 → 실무협의체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긴밀한 상호 연계를 위해 위임 및 전결규정을 두어 직원 → 실무협의체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 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등 협의체의 주요 사항은 반드시 대표 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공공) 결재를 받도록 함
 -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결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재서류를 단일 문서(1개)로 진행하여야 함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안(예시) =

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예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000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 위원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의한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4.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5.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6.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장 시·구·군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3조(기능) 중 7~15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군·구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면·동협의체에서 전문가문위원 필요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①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000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⑤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사안별 위임전결 규정(권장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음

위임전결 규정(권장 사항)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간 사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업무 관리	협의체 운영계획				
	운영 계획의 수립		○		
	운영 계획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실무분과회의 개최		○		
	전체(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업무 처리 및 협조				
	기관 중재안 통보			○	공공
기관간의 협조사항 처리	○				
사업 관리	사업의 시행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계획		○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홍보 활동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		
	대회(매체 활용 및 발간)			○	
	교육 활동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	공공
	조사연구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조사연구계획의 확정			○	공공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	공공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간 사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사무 관리	사무관리				
	문서의 통제	○			
	인장관리	○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		
	사무실 관리운영	○			
	예산 결산				
	예산 결산의 총괄			○	시·군·구 담당팀 협의
	예산 편성과 교부신청			○	
	예산의 정산보고			○	
	추경예산안 편성			○	
	구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지출	○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			
	위원참석수당 지급	○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400천원 초과)			○		
예산의 집행(400천원 미만)	○				
직원 관리	직원의 관리				
	직원의 채용 계획		○		
	직원의 채용 및 임용			○	공공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		
	직원의 복리후생		○		
	실습 및 연수생 관리	○			

* 비고란의 ‘공공’은 공동위원장(민간, 공동) 결재를 의미함

(8) 사무실의 설치·운영

- 지자체는 협의체 소속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독립적인 위치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그 밖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별로 조례 또는 자체 협의체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함

- 공무원이 아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관계자 및 직원은 필요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간 정보교류,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모임에 참가할 수 있음

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사례(분야별)

(1) 협의체 기능강화 분야

- 사·군·구 : 경기도 남양주시
- 활동명 : 유사성격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협의체 기능 강화
-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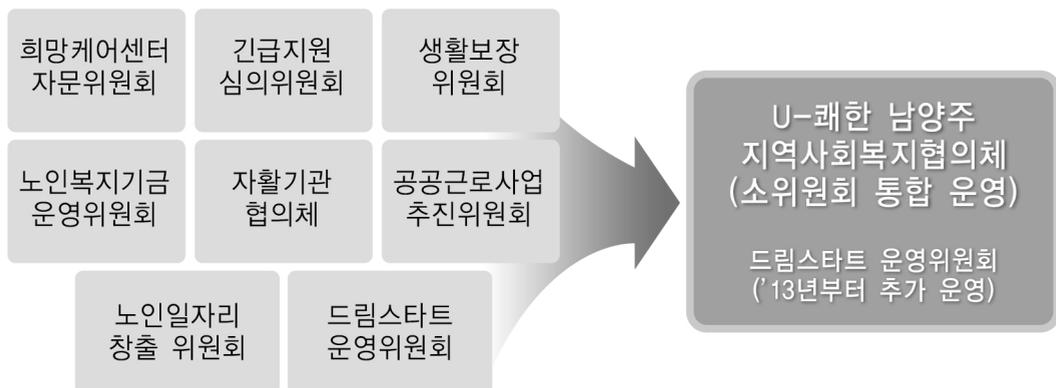
○ 목적

- 각 개별법령에 의해 무분별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구심점을 찾고자 '08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위원회를 통합
- 협의체를 지역복지 통합기구로서 민관협력의 중심역할 유도
-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절감* 효과 예상

* 연간 42,840천원 예산 절감 예상 (통합 전 년51,240천원 소요 → 통합 후 년8,400천원)

○ 내용

- 유사성격의 위원회 및 미활동 위원회 통·폐합 시행
- 개별법령에 의한 분야별 위원회를 협의체로 기능 통합



* 긴급복지지원 등 13개 위원회(희망복지과 3, 사회복지과 6, 가족여성과 4) → 8개 위원회
→ 1개로 통합(대표협의체 내 소위원회 구성),

** 6개 위원회 → 5개 존치, 1개 폐지(위원 61명 감소)

○ 성과

- 위원회 통합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
- 민간의 참여확대로 전문성과 개방성 제고
- 협의체 및 관련 부서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2) 복지계획 등 정책 심의·제안 분야

□ 사·군·구 : 충북 보은군

□ 활동명 : 지역사회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활동

□ 활동 소개

○ 목적

-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약자 및 지역주민들의 보행권 보장
-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민스스로의 권리 확보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시민의식발현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 내용

민	관
<p>범군민 릴레이 캠페인을 통한 계몽운동 [서명운동 전개, 계몽 안내지 배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번영회 : 노점상 입점에 대한 의견 수렴 • 상가대표 : 보행권 확보를 위한 상가적치물 치우기 운동 • 보행권 확보 민관 추진단 : 전통시장, 상가, 노점상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추진 	<p>공공기관 부서별 역할분담 및 해결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 군청 : 건설방재과(노점상 및 적추물 상가파악), 경제과(노점상 자리확보 가능성 파악 및 선진시장 견학) • 보은군 경찰서 : 차없는 거리 및 일방통행 가능성 논의

○ 성과

- 지역사회내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 및 참여의식 확산
-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민관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 및 역할 인식

- 시·군·구 : 충북 증평군
- 활동명 :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 활동 소개
- 목적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계획에 대한 책임성 및 이행력을 높임
- 추진체계
 - 총 10명(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중 선발)

구분	담당	비고
자문	외부자문	3기 복지계획 TF 위원 중 위촉
	내부자문	
모니터링단	모니터링단장	단장(당연직)
	여성·보육부문	자격 요건 1. '11~'14년 모니터링평가 경험자 2. 교육경험 및 평가능력을 갖춘 협의체 위원 3. 제3기증평군 복지계획 TF팀 위원 활동 경험자
	전달체계 부문	
	아동·청소년 부문	
	노인복지 부문	
	장애인복지 부문	
	기초자활·고용 부문	
보건의료연계 부문		

- 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행력 제고에 관한 모니터링
 -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의 평가 수립 반영
 - 민관 업무담당자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평가 매뉴얼 교육
 - 연차별시행계획 평가 및 계획을 위한 공개 검토회의
- 성과
 - 일관성 있는 목표설정 및 접근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방지
 - 증평군의 복지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중기복지계획과 연차별시행계획의 연계성 상승

(3)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 사·군·구 : 전남 여수시

□ 활동명 : 섬복지 네트워크 구축

□ 활동 소개

○ 목적

- 여수시 섬지역(유인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서비스 불평등 완화

* 44개 섬 26천여명 거주, 주민 노령화 자조역량 미약, 사회복지시설 부족 및 복지서비스 접근성 취약

- 지역복지 자원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체계망 구축

○ 추진경과

- '06.05 : 협의체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결의

- '07.01 ~ '09.12 : 큰 여수 희망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 '08.01 : 여수섬복지네트워크 구축 섬지킴이 희망나눔 사업 수행

○ 내용

-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통합서비스, 자원개발연계, 지역네트워크 강화, 주민 조직화* 등 서비스 실시

* 주민조직화 : 섬지역 대상자 발굴을 위한 이장들 주민조직화, 서비스 인력 및 이동 지원을 위한 청년회 주민조직화, 재가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및 부녀회 등

○ 추진체계

- 협의체 실무분과로 여수섬복지네트워크 운영 및 전담인력 채용



○ 성과

- 거동이 불편한 섬지역 소외계층에게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등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정기적·체계적 서비스 발굴 및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관심 및 자조·자립 활동 증대, 지역 주민간 상호협력의식 강화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관중심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로 확대
- 복지자원간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 사·군·구 : 광주광역시 서구

□ 활동명 : 후원조직(한가족나눔분과) 분과활동 활성화

□ 활동 소개

○ 목적

-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부족을 위한 후원자 발굴
- 분과(한가족 나눔분과) 신설·운영을 통해 발굴된 후원자들의 체계적 관리 및 유지

○ 추진경과

- '12.05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1:1 결연) 추진 및 후원자 그룹 “한가족 나눔분과” 출범
- '12.07 ~ 현재. 매년 후원자 모집('14년도 44명, 재능기부+4천만원 후원금)

○ 내용

- 생활지원사업 : 저소득 가정 일상생활 지원 등
- 창업지원 사업 : 영세사업장 자립지원을 위한 후원금 지원 등
- 인재육성 프로젝트 : 취약계층 특기 아동 장기육성 지원 등
- 주거개선 사업 : 저소득 가정 주택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등

○ 성과

- 자원과 복지마인드를 가진 44명의 후원자 발굴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체계구축
- 저소득 가정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역 나눔문화 확산

(4)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발굴 분야

- 사·군·구 : 경기 남양주시
- 활동명 : 시민복지 정책 참여단 육성
- 활동 소개

○ 목적

- 남양주 복지현장에 대한 이해 및 복지정보 기회 제공
- 시민자원 개발 및 시민복지 정책 참여단 육성

○ 내용

-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민복지정책참여단 공동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민복지정책참여단	남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교육장소 지원 및 접수 • 강사 및 기관 섭외 • 시민복지학교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복지학교 운영기획 • 시민복지학교 홍보 • 조별 운영스텝 지원 • 시민복지학교 운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시민 및 주민조직 대상 홍보 • 인센티브 부여

- 시민복지대학 수료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요 복지정책 및 복지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민의견 제시 및 시민복지학교 기획 및 운영 지원 등

○ 성과

- 시민들에게 보건·복지·고용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관내 지역 기관과 시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

(5) 동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분야

- 사·군·구 : 광주 북구
- 활동명 : 동복지협의체 활성화
-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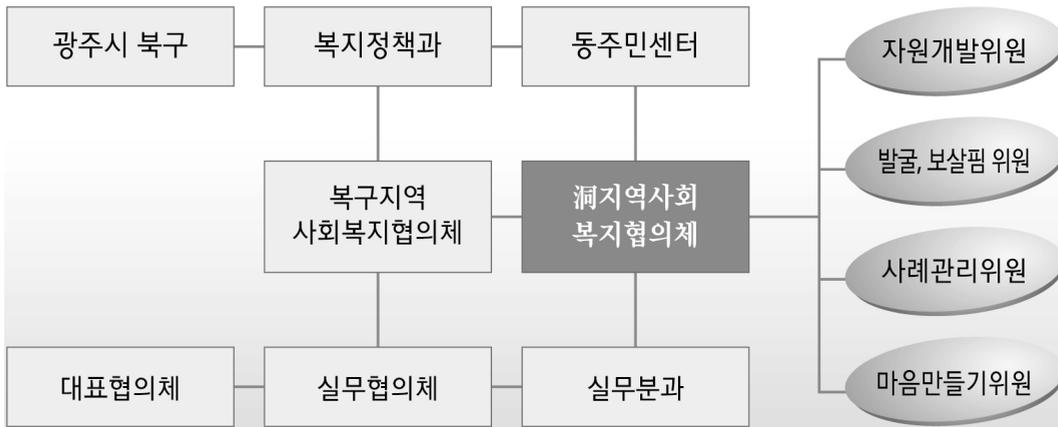
○ 목적

- 복지대상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동단위 민관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과정

- '10.12 동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설립간담회
- '11.01 6개동 48명 시범 운영
- '11.06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및 26개 전동 170여명 협의체 발대식
- '14.09 동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추진체계



= 광주광역시 복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자원개발위원	발굴·보살핌 위원	사례관리 위원	마을만들기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성원 : 주민자치위원회 중심 구성인원의 1/3 • 임기 : 3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 선출방식 : 동장추천 및 공개모집된 사람 중에서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성원 : 통장중심,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지도자 구성인원의 1/3 • 임기 : 3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 선출방식 : 동장추천 및 공개모집된 사람 중에서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성원 : 대상자거주등록지, 대상자 방문간호사, 대상자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관 담당자, 희망복지 지원단 계장과, 통합사례관리사 구성인원의 1/3 이하 • 임기 : 3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 선출방식 : 동장추천 및 공개모집된 사람 중에서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구성원 : 자생단체,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구성인원의 전체 • 임기 : 3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 선출방식 : 동장추천 및 공개모집된 사람 중에서 선발

○ 성과

- 27개소 전동 동복지협의체 설치, 현재 250명 활동 중('14년 말 기준)
- 동복지협의체 운영매뉴얼 제작·보급
- 동복지협의체 우수사례 평가대회 및 사례집 발간

(6) 지자체 지원 및 협력 분야

□ 사·군·구 : 경기 수원시

□ 활동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활동

○ 목적

-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및 민관협력의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 '05.2.1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민관 관계자 9인) 운영
- '05.4.~6. 시범지역 방문 및 준비단 회의
- '05.7.~9. 조례 제정
- '05.9.~11.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 '11.6.~12.2. 협의체 미션 및 비전 선포,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도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내용

- 협의체 구성 및 조례제정 준비 민관TFT 구성, 운영
- 민관협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안정적 사무국 운영 지원



- 협의체 구성 초기부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사무국 직원 4명, 2015년 예산 467,981백만원)
- 관련 부서 팀장 및 주무관이 실무분과에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실무분과를 통한 정기적 민·관 논의의 장 마련, 민·관 공동분과위원장제를 통해 민·관의 공동 책임성을 부여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정립



○ 성과

- 사무국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네트워크 경험을 축적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
- 시스템적으로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조직구조 체계로 참여도 및 책임성 강화

바. 협의체 운영관련 그간의 유권해석 사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하며 이에 의할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자체 소속기관으로 볼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 1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관련 심의·자문기능도 수행하는 민관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음

(2) 상근간사 근로계약 권한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4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지자체는 상근간사 인건비 또는 협의체 운영비 지원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동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 협의체 운영 자원부담 및 지자체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상근간사의 근로계약 및 급여수준 선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협의체 위원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상근간사 급여의 호봉 가산 근거에 관한 사항

☞ 현행 협의체 운영지침상 상근간사의 신분 및 처우와 관련, ‘상근간사와 재계약시 매년 1호봉씩 가산하고 다만, 상근간사의 호봉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별도 지침에 의거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협의체 상근간사의 호봉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면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상근간사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안내’ 유사경력인정 범위에 따르면 협의체 상근간사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하되 ’12.1.1 이후 근무 경력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됨

’12.1.1 이전부터 협의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사의 경력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로서 일정 경력 이상을 가지고 임용된 자들로 협의체 운영 및 예산관리 등 행정업무, 지역사회복지관련 기획 및 사업개발, 지역사회 유관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조정 및 연계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음.

담당업무의 내용, 임용주체 및 요건, 복무관리의 엄격성 등을 감안할 때 경력인정이 지침에 포함된 시점부터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에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적절함

※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2015년)에 의할 경우, ’12.1.1.이전의 협의체 상근간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다만 경력 합산 시점은 ’15.1.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간사의 자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경험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인정여부 질의

☞ 협의체 간사의 요건 중 해당 자격증의 소지와 현장경험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협의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동등 자격인정자 포함)을 취득 후 자격의 등급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할 경력을 의미함

(5)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운영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개정안(2015.1시행)’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 없이 지자체에서 협의체 운영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은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2제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통해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상당 수의 시·군·구 조례에서 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15.7.1.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6)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상 협의체 위원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나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협의체 운영지침상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체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체 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연임이 가능함.

이 경우 인적자원의 충분성, 지역특성에 관하여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전체 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 없음.

※ 협의체 위원 임기와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원의 연임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 시·군·구 조례 제정 범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법령’이란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말하고, ‘법령의 범위안’이란 **그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를 의미함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그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 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4.4.23., 선고, 2002추16, 판결 등)

아울러, 조례의 내용과 목적이 법령의 내용 및 목적과 같은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1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추진 배경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

□ 그간의 경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근거 마련(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신설 ('03.7.30))
-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내(지침)마련 ('05.11월)
- 제1기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침 안내 ('06.9월)
- 제2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내(지침)마련 ('09.9월)
- 제2기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침 안내 ('10.9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정 안내 ('13.9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연구용역 실시 및 계획수립 매뉴얼 지자체 의견 수렴 ('13.6~11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교육 및 설명회 등 ('13.11~12월)
 - * 시·도·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상근간사 설명회 개최, 시·도·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11~2월)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13.12월) 및 시·도 및 시·군·구 과장급 설명회 개최 ('14.6월)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4.12월)
- 시·군·구 및 16개 시·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완료 ('14.12월)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2007년부터 수립)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
-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제화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제화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 수립주체별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계획수준별 :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주기, '07~'10/'11~'14/'15~'18), 연차별 시행계획

□ 계획 수립기간 및 제출시기

- 시·군·구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연차별 시행계획 : 시·군·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주요 내용(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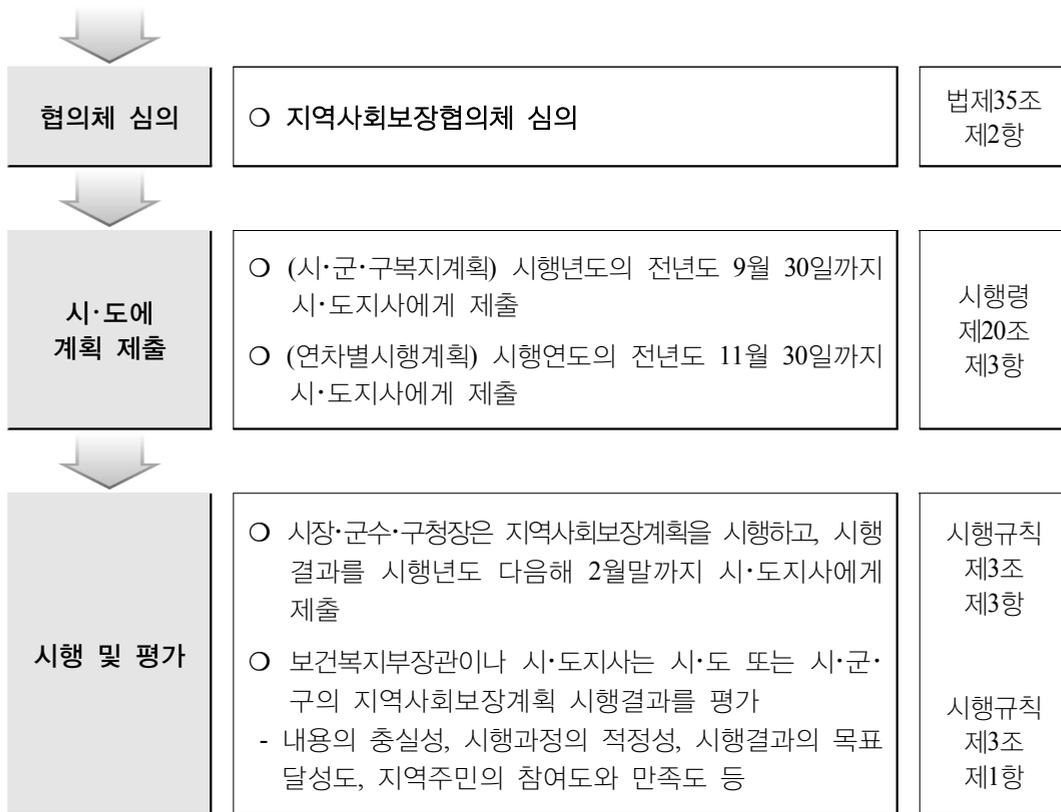
○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심의 및 시행결과 평가절차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절 차	내 용	비 고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면 사회보장문제, 삶의 질 등을 살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필요(욕구)를 수렴 ○ 사회보장자원조사(공급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복지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 자원을 망라 	법제35조 제5항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등 	법제36조 제1항
지역주민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협의체 심의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수 있음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절 차	내 용	비 고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욕구조사(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당면 사회보장문제, 삶의 질 등을 살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필요(욕구)를 수렴 ○ 사회보장자원조사(공급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인력, 조직, 재정 등 사회보장자원 조사 - 복지관 등 공공복지자원, 자원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을 망라 	법 제35조 제5항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 제36조 제2항
위원회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법 제35조 제3항
보건복지부에 계획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복지계획) 시행년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연차별시행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행령 제20조 제3항
시행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 평가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정책정보 생산과 객관적 판단 근거 제공
- 계획된 사업 집행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제고

□ 평가 유형 및 방법

-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타당성 평가(이하 계획 타당성 평가)’, ‘연차별 시행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이하 연차별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평가(이하 성과 평가)’ 등 3가지로 구분 가능
 - (계획타당성 평가) 계획 집행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평가*
 - * 2기 계획의 환류(feedback), 3기 계획 수립과정 적절성과 계획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실시
 - (연차별 평가) 3기 계획의 매년 수행결과 산출에 대한 1년 단위 과정평가*이며, 지역 사회보장계획의 과정평가와 시행결과 모니터링
 - * 연차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의 타당성, 핵심과제 및 세부 사업의 연차별 목표와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집행에 따른 결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
 -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목표에 따라 설정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평가 주체 및 역할

- 시·군·구
 - 시·군·구의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업무를 담당할 자체평가팀과 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회* 구성
 - * 평가위원은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임
 - 3가지 유형 평가(계획, 연차별, 성과)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도의 자체평가는 시·군·구와 동일하게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
- 시·도는 시·도 계획 및 연차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시·군·구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 이 개 영역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중앙정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및 시·도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매뉴얼 개발과 보급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시·군·구 및 시·도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행 및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방법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 시·도 계획 시행결과 및 시·군·구의 평가결과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확정 및 우수 지자체 선정
- *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사례를 선정,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적극 홍보
-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정례화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마련

□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우수사례의 발굴로가 확산, 평가와 컨설팅 병행

(1)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타당성 평가

○ 계획 타당성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집행결과를 예측하고 실현가능성을 점검
- 계획의 추진과 집행에 적합한 관리방안 모색

○ 계획 타당성 평가의 과정과 절차

- 자체평가팀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팀의 평가자료 준비 및 작성 → 평가위원회 1차 평가 → 평가 결과 반영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분 수정 → 평가위원회 2차 평가 → 수정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타당성 평가 결과 제출 → 타당성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

○ 계획 타당성 평가의 평가 항목

- (계획수립 과정) 2기 계획 평가의 적절성, 계획 수립과정의 민주성, 계획 수립 과정의 충실성, 계획의 지역파급성
- (계획 내용) 2기 계획 평가결과의 환류, 지역성, 적절성, 시·군·구 계획의 조정 및 시·도 지원방안의 적절성

(2) 시·도 및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연차별 평가 개요

-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당초 의도한 대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평가’와 ‘모니터링’
- (과정평가) 연차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점검, 연차별로 사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 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정책정보 산출 등
- (모니터링)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을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것과 비교하여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 당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 수정·보완

○ 연차별 평가의 과정 및 절차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자체평가팀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팀의 평가자료 준비 및 작성 → 평가위원회 1차 평가 → 1차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보완 → 평가위원회 2차 평가 → 연차별 평가결과 제출 → 연차별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

○ 연차별 평가의 평가항목

- (추진과정의 평가항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충분성, 추진 체계 준비성, 추진일정 준수의 충실성, 연차별 추진을 위한 지역 파급성
- (추진결과의 평가항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활동의 적절성,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달성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을 위한 계획 대비 예산 집행 실적

(3)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평가

○ 성과평가 개요

- 성과평가는 연단위의 계획-시행-평가 과정의 책무성을 확보하며, 적절한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높여 질적 성장을 도모
- 성과평가에서 성과는 계획집행과 사업 추진에 따른 산출과 영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과 계획된 목표달성의 측정*
-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달성도, 계획 추진의 최종 결과인 지역사회복지수준 변화 측정, 계획 수립시 설정한 전략목표의 성과지표 측정 등

○ 성과평가 방향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 충실성, 전문성 평가
- 연차별 시행결과는 종합적인 평가를 지향하면서, 시·도 및 보건복지부 평가체계의 차별성 유지

4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변화

구 분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명칭	지역사회복지계획 (보건의료·사회복지 위주)	지역사회보장계획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범주 확대)
지역주민 참여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심의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지방의회 보고 절차 신설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 지역주민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필요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지역내 사회보장 실태와 지역주민의 인식 등에 대한 필요한 조사(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정기 또는 수시 실시 - 계획 수립시 동 조사결과 반영 가능
계획내용	(시·군·구 계획) -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 대책 -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 - 사회복지전달체계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제공방안 - 지역복지 통계수집 및 정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시·군·구 계획내용 확대)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신설)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추가 -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시·군·구)
	(시·도 계획)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차별화) - 시·군·구 지원목표 및 전략 - 사회보장급여 기반 구축방안 -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등
계획/시행 결과 평가 지원	- 지역복지계획 시행의무 부과 -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의 계획 시행 결과 평가 - 계획 시행결과의 공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의무 부과 - 시·도지사의 시·군·구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제출 -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결과의 사회보장위원회 보고절차 도입

V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 관련근거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설법)

□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 18조제2항, '13.1.27시행)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13. 1. 27.>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2013. 1. 27.>

부칙 <법률 제11239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항·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법인별 적용 기준

- ① 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7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 : 기존 임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 따라서 2013.1.27이후에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새로 취임(연임 포함)하는 임원 중 이사정수의 1/3이상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 ② '13.1.27. 현재 **이사가 6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 : 법 시행 동시에 이사를 7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3.1.27이후에 이사정수 증원으로 인해 새로 취임하는 임원은 모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 ③ '13.1.27. 이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 설립부터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적용, 설립당시 취임하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을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 법인별 외부추천이사 수

이사정수	외부추천이사 수
7~8명	2명
9~11명	3명
12~14명	4명
15~17명	5명
18~20명	6명

* 이사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 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2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 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예시 : 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제1항)
 -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노인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
 -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추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추천 요청 공문 양식(예시)>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 사회복지위원회)

제목 법인 이사 추천 요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책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
2. 주요 사업 : 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 : 2명 (2배수 이므로 4명 추천 요청)
4. 기타 : ○○○

붙임 : 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담당자 :

결재자 :

연락처 :

□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2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시행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 세부 지침을 정할 경우 관할 법인 및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되,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기준 예시>

- 추천기관의 추천후보자 명단 작성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공개모집 및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 명단(인력풀)을 작성·관리·업데이트 하고, 특히, 후보자 명단은 분야별(예: 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기타분야/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분야 등)로 구분
-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조사(법인명, 법인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요청 예상 시기 등)
 - 이사추천후보자명단 확정 :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가진 인사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이사 추천 후보자 명단으로 확정
 - 정식 추천 : 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추천·통보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
 -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등) : 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 ※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함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1 평가 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협의체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체평가는 협의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성과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2 평가 틀의 구성

가. 평가 방법

(1) 평가 주체

- 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평가는 자체 점검의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한 평가주체는 협의체 대표 및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가 필요

(2) 평가 시기

- 협의체의 평가 시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통상 1년의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이 바람직
 - 협의체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함으로써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3) 평가 내용

- 협의체 평가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협의체의 구조, 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의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 변수들을 점검

나. 평가항목의 결정

(1) 지역 특성

○ 협의체의 구성과정, 구성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

점검 영역	내 용
지역특성	•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지역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 내용과 규모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자원(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와 같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보를 지역사회가 공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과정의 원활여부, 지역특성이 협의체 구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

점검 영역	내 용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위원 구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 협의체 위원구성 및 위원장 선발 시 민주적 절차를 채택하였는가?
	•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 자원주체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 실무협의체위원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는가?
	• 실무분과는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전형적 복지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 조직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협의체 참여 위원들이 협의체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 협의체 위원들이 소속기관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로지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한 윤리강령이나 행동지침을 채택하고 있는가?
	• 신규 위원들을 위해 협의체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상근간사)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전담인력(상근간사)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가?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 협의체의 기능과 운영관련 영역을 평가

- 협의체 기능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협의체 기능과 관련하여 그 수행정도를 파악
-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협의체 운영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평가

점검 영역	내 용
운영 및 기능	• 협의체의 기본기능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 등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과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 실무협의체 및 분과활동은 지역내 사회보장자원의 조직화, 연계 및 조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실무협의체와 분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규적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가?
	• 협의체운영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한 분명한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협의체 운영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서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나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가 ?
	• 회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들을 채택·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적절한 집행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및 협력구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위의 각 평가항목은 예시이며, 지역별로 협의체 운영과 관련 하여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 및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평가 방식

(1) 참여 관찰 및 심층면접

- 각 지역별 평가위원이 직접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관찰하고, 사업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내용에 기반하여 협의체 운영의 전반적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

(2) 서비스대상자 만족도조사

- 각 지역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30~40명에 대하여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협의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전·후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방식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 제공된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받은 횟수(공식적 지원 + 비공식적 지원) 등
- 필요서비스, 서비스 중복 수급 여부 등
- 서비스 이용방식(찾아온 기관수, 찾아간 기관수, 연계된 기관수)
- 서비스 연계 경험
- 각 공급주체별(사회복지, 보건, 읍·면·동사무소) 만족도
- 사후 만족도 측정 : 서비스의 충분성(필요서비스 포함), 서비스의 질적 변화 정도,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협의체 서비스 제공 후의 달라진 점, 협의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3) 협의체 자체점검 조사

- 자체점검 조사는 협의체 참여자(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위원, 실무분과 위원, 시·군·구 담당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3 평가결과 활용

- 자체 평가결과는 익년도 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에 반영되어 활용
-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전년도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를 익년도 평가과정에 포함하여 평가와 협의체 운영의 연계성을 확보

자체점검표(예시)

점검 영역	내용	점검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조치 계획
지역 특성	•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 내용과 규모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자원(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보를 지역사회가 공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구성	• 협의체 위원 구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 협의체 위원구성 및 위원장 선발 시 민주적 절차를 채택하였는가?						
	•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 자원주체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 실무협의체위원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하였는가?						
	• 실무분과는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전형적 복지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 조직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협의체 참여 위원들이 협의체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점검 영역	내 용	점검 결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조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위원들이 소속기관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로지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한 윤리강령이나 행동지침을 채택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위원들을 위해 협의체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상근간사)을 확보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상근간사)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가? 						
운영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의 기본기능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 등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과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체 및 분과활동은 지역내 사회보장 자원의 조직화, 연계 및 조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체와 분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규적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운영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한 분명한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운영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서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나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들을 채택·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적절한 집행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및 협력 구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1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배경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발굴체계 구축**이 주요내용으로 포함(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14.5월)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14.7월)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의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공공주도형)**” 시행('14년 1억원 5개소 → '15년 2억원 10개소)

민관협력 성과

- ◆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공공주도형)> '14년 총 5개 시·군·구 추진, 국고 100백만원 투입복지대상자 총 1,254가구, 민간자원 총 614백만원 규모 발굴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매뉴얼**” 발간·배포('15.3월, 5천부)
- ◆ <읍·면·동 민관협의체구성/복지통(이)장제 시행> 총 225개 시·군·구 추진('14년12월 기준)
 - 읍·면·동 협의체 : 218개 시·군·구 3,276개 읍·면·동 구축, 총 74천명의 주민·공무원 참여 → 사각지대 95천가구, 민간자원 135억원 발굴, 서비스 330천건 연계
 - 복지통(이)장제 : 201개 시·군·구, 전체 통(이)장 94천명 중 약 83천명 참여 → 사각지대 78천가구, 민간자원 94억원 발굴, 서비스 201천건 연계

-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제6항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 마련('15.7월 시행)

나. 개념 및 성격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 추진(「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조직이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하 관계를 갖는 조직은 아님

= 시·군·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교 =

구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방법	시·군·구청장 위촉	읍·면·동장 추천, 시·군·구청장 위촉
규모	10명이상 40명 이하	10명 이상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지역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③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복지위원의 대표자 ⑤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읍장, 면장, 동장 ② 지역의 사회보장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 단체의 실무자 ③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④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⑤ 복지위원 ⑥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⑦ 그 밖에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②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③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④ 그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구성·운영의 목적 및 기능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단위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 취약가구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지원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및 지역복지증진 과정에 주민참여 기반 마련

2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가. 구성 방법 및 규모

협의체 구성 방법(「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군·구청장이 위촉
- 위촉 대상(자격)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담당공무원은 읍·면·동장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외 공무원은 지역 운영 여건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읍·면·동 단위 협의체 구성(예시) =

-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보장분야의 이용 및 생활(거주)시설의 중간관리 실무자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 등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익단체(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담당자 등
- 복지위원
-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주민조직(부녀회, 자원봉사회 등)
- 그 외 지역사회에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협의체 구성 규모 및 내용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협의체 위원들의 구성 성별 고려 필요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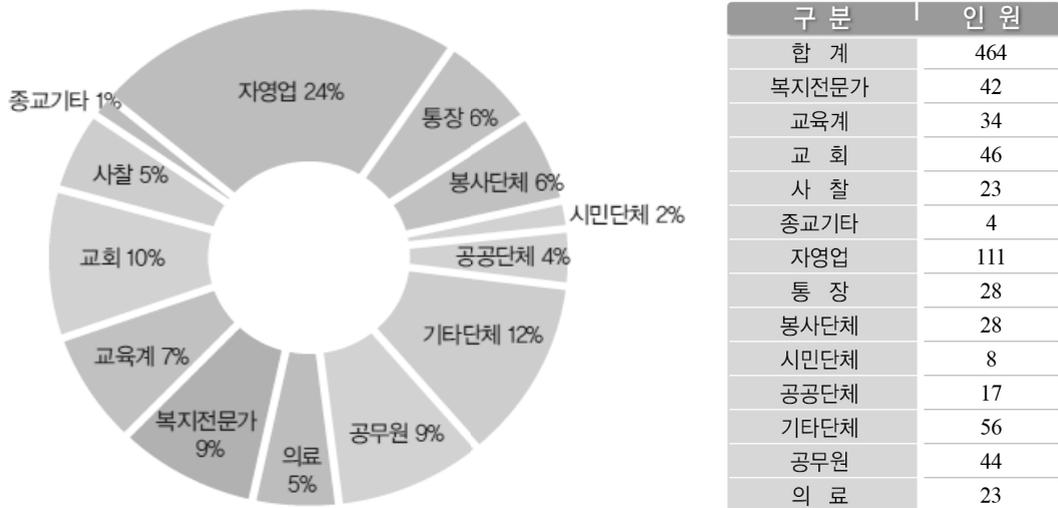
-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통(이)장 협의회, 상공회 회원 또는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 기관 관계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 통(이)·반장 만으로 구성(X), 복지위원만으로 구성(X), 특정 몇몇 단체원으로만 구성(X), 사회복지 종사자만으로 구성(X)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에 협력을 얻기 위해 우체국* 관계자, 교육복지 관계자 등 최대한 영입

* 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5.1월)

= 서울 성북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구성 현황(2013) =



= 서울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2014) =

(단위 : 명)

계	자영업	기업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임대업	교육기관	복지전문가	금융기관	기타
731	294	66	48	40	29	51	25	30	148
100%	40%	9%	7%	5%	4%	7%	3%	4%	20%

[참고] 광주 북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장 양식

위 촉 장

소속 :

성명 :

귀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00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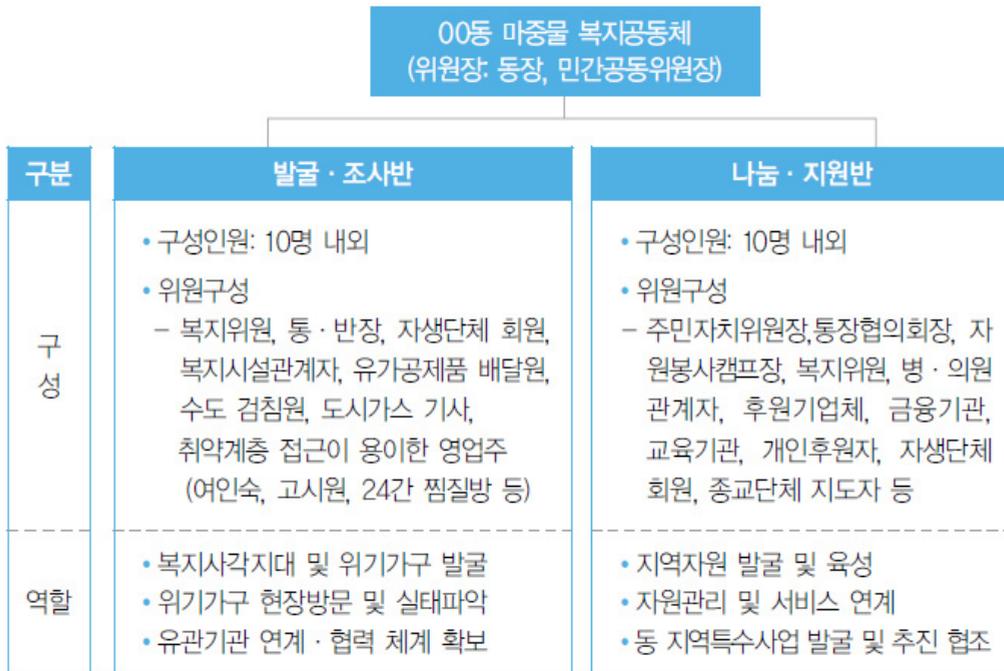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000

나. 조직 및 임기

-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장(위원 중 호선)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 장기간 소수의 주민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여 협의체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유의
- 조직체계는 지역 필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분야 등 세부 역할분담에 따른 분과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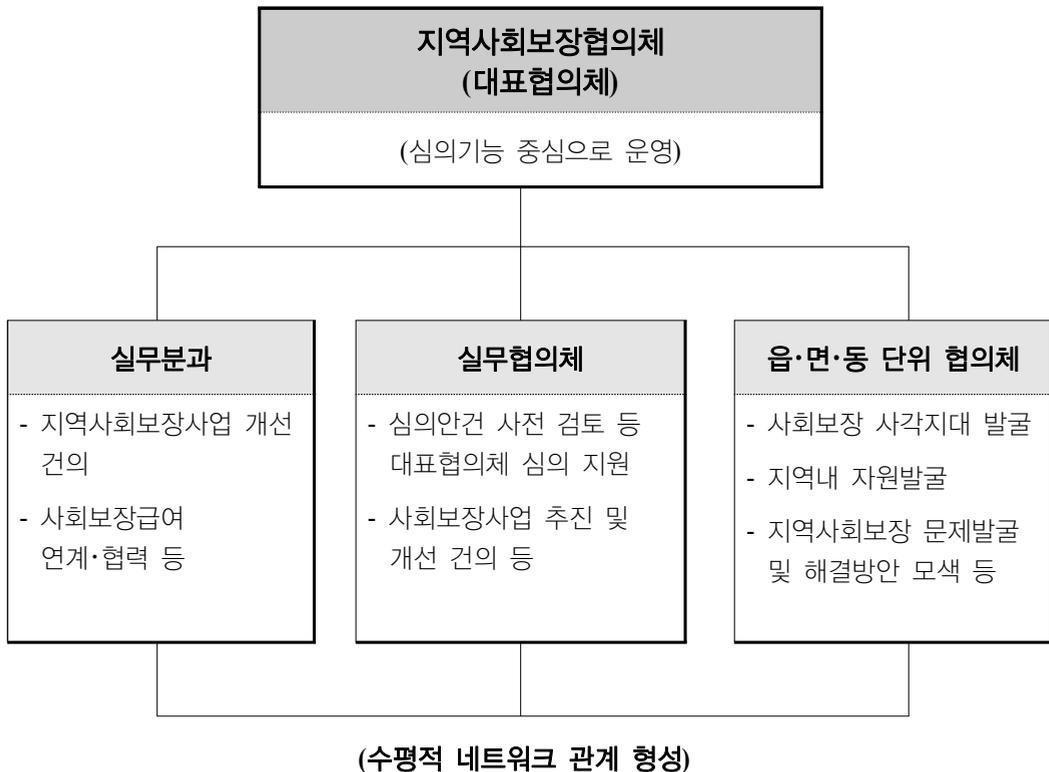
= 서울 성동구 동복지협의체 조직체계 =



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예시) =



3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가. 기본방향

운영 원칙

- 시·군·구청,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사업 추진
 - 필요한 경우 시·군·구 사업팀, 사회복지협의회 및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부문과 협력 체계 확대 구성
- '14.7월 이후 구축된 복지통(이)장제 및 우체국 조직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 시·군·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 총괄, 사업 홍보 및 예산지원. 협의체 운영 근거(조례) 제·개정 추진, 시·군·구 총괄 매뉴얼 마련(필요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주민 및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 지원,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추천, 위원이 발굴한 대상에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및 지원추진, 읍·면·동 협의체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등
- 읍·면·동 협의체 :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발굴,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등

= 서울 성동구 동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원체계 =

구 분	세부내용
성동구청(희망복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총괄 •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 참여 • 민관협력 시범사업 홍보 및 예산지원 • 의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지원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복지협의체 민관협력 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 • 지역주민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 의뢰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
동복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가구 및 중점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의뢰 • 사례관리 가구 발굴 및 자체 사례회의 개최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별 지역자원 개발 및 지원 • 동별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추진

= 서울 서대문구 민관협력 지원체계 =



□ 시·군·구 운영 매뉴얼 마련

- **(필요성)**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 **(작성방법)**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없는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혹은 읍·면·동 협의체 대표 등과 사전 논의 후 확정
- **(활용)** 매뉴얼은 모든 읍·면·동 협의체에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잘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워크숍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내용)**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은 사업개요(목적, 취지 등), 협의체 구성방법 및 임기 등 기본적인 운영 규정 협의체 운영체계 및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 취약 가구 발굴 시 조치방법과 지원과정,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방법, 지역 복지자원 확보 방법 등

* '15.3월에 발간·배포된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매뉴얼'을 참고하여 구성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발간자료 코너에 파일 공개

[참고] 2014년 시범사업 및 참여기관(충남 서천군) 사업수행매뉴얼 구성

- 운영개요
 - 읍면복지협의체 의의
 - 읍면복지협의체 운영 : 조직, 인력, 주요활동, 운영체계
- 사각지대발굴 운영세부절차
 - 사각지대 개념
 - 수행주체
 - 수행절차 및 방법
- 자원개발
 - 수행주체
 - 수행방법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
- 읍면협의체 사업비 집행기준

□ 읍·면·동 별 운영 세칙 마련

- (필요성) 매뉴얼과 별개로 각 읍·면·동 별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칙 마련
- (작성방법) 각 읍·면·동별로 협의체 위원들이 논의하여 확정하되 기본적인 사항은 시·군·구 운영매뉴얼에 규정 가능
- (주요내용) 위원 구성 세부내용, 위원장 등 임원 정수 및 선출방법, 정기회의, 복지대상자 발굴시 지원확정 방법 및 지원기준 등

[참고 1] 서울 성동구 동 마중물 복지협의체 운영규정(예시)

00 동 마중물 복지협의체 운영규정(예시)

1. 목 적

00동 마중물 복지협의체(이하“복지협의체”라 한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하여 주민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2. 명 칭

명칭은 “성동구 00동 마중물 복지협의체”로 한다

3. 구성 및 기능

- (1) 복지협의체 구성은 20인 내외로 하며, 당연직 위원(동장)과 협의회 위원중 1인을 호선하여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2) 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동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②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거나,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개인
 - ③ 지역내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한 영업주 및 관련 직업을 가진 자
 - ④ 동장,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 (3)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 ②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지원
 - ③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 지역특수사업에 대한 논의 및 추진방안 모색

4. 비밀준수

복지협의체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의 위해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7. 회의 및 의사

- 위원장은 해당 복지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1/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정례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 지역복지 공동사업 추진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례관리는 즉시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 협의체 복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동 주민생활팀장)를 둔다.

8. 회의록 작성

- 복지협의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①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② 회의 참석자 명단
 - ③ 협의사항 및 결과
 - 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복지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다음 회의 때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 2] 청주시 수곡2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체는 “수곡2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본 협의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체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 원

제3조(구성)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제2조의 목적에 적합한 자로서 지역사회의 주민서비스 자원을 제공하거나 발굴·연계가 가능한 자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주민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및 개인, 단체로 동장이 위촉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위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기여 하여야 하며 회의와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고문) 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고문을 둔다.

1. 위 원 장 : 2명(공공부문, 민간부문)
2. 부위원장 : 2명
3. 고 문 : 1명

제7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다음 방법에 의거하여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강한다.

1.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된 1명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
3. 해당지역 시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협의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9조(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정기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사례관리 사업은 실무자 중심으로 기 구성되어 있는 수호천사 네트워크 분과(4개 분과)에 위임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분과에서 진행되는 과정 또는 결과를 보고하고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력한다.

제10조(역할)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3. 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복지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와 지원)
4. 지역 공동 협력사업 추진, 승인 및 시행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1조(간사)

1.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되, 간사는 동 주민센터의 주민지원담당으로 한다.
2.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한다.
3. 간사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5장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내용 또는 상정안건
4. 회의결과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장 기 타

제13조(비밀준수 의무)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주요 기능

□ 복지대상자 발굴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특히 유의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건강음료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지역주민과 협력

[참고] 발굴체계 사례

- 부산 북구, 서울 강북구 :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 민간자원으로 독거노인에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확인
- 충남 천안시 : 맞춤형 집배 모니터링 사업
 - 집배체계시스템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 전남 순천시 : 소망소리함
 - 관공서에 소망소리함을 설치,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발굴

-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
 - 주민등록일제조사 및 동절기 일제 조사 등과 연계

[참고] 취약계층 일제조사 사례

- 서울 서대문구 : 지역주민 전수조사
 - 복지통장이 불필요한 일부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를 조사
- 서울 노원구 : 남성 독거노인 전수조사, 법정 차상위 전수조사
- 경기 오산시 : 동절기 단전가구 현장조사, 취약계층 집중 일제조사
 - 창고·지하철 등 거주자, 찜질방·고시원 등 장기 거주자 및 아동 동반 투숙자 등
- 부산 서구 : 한부모 가정 전수조사
- 대구 서구 : 행복을타리사업(50세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
- 광주 광산구 :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연계, 194천 가구 전세대 조사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중인지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 한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

[참고]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및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 소득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 가족 구성원의 뇌병변 등 지체장애와 발달장애 등 지적장애로 인하여 돌봄 부담이 큰 가구
-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 창고, 공원, 공중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및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 **(발굴 후 처리방법)** 복지대상자 발굴(협의체 위원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확인 및 처리(필요시 협의체 회의 후 지원연계)

[사례] 충남 서천군 면 협의체 위원 발굴 및 지원사례

- 미혼 여성 독거노인이 정신질환으로 본인 및 이웃에게 위험
 - 군은 수급자 선정 및 집수리·폐기물 처리, 정신보건센터는 단기입원 추진, 희망복지추진단은 모금행사, 새마을금고는 밑반찬 지원, 경찰서 페인트 봉사 활동 등으로 공동해결
- 부모님 이혼으로 조모와 생활하다 조모사망으로 방치된 청소년(18세, 여)를 희망 복지추진단 위원 발굴
 - 성폭력 상담소 성교육 지원, 푸드마켓 및 성당 부식 지원, 다미봉사단 정서 지원, 흥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거개선사업 및 세탁기 지원 등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주체)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호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 (수행시기) 지속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 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자원관리 및 활용) 행복e음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협의체-모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지역 특화사업 추진(선택사항)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서비스(사업) 개발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사례] 충남 서천군 마산면 특화사업

○ 마산면은 농어촌 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버스승차장 까지 40분이상 도보 이동이 필요한 마을

→ 면 협의체가 병원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사업 추진

○ 그 외 독거노인·장애인가정 등 재래식 화장실 정화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지역특성·주민욕구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 붙임 : 민관협의체(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사례

가. 복지대상자 발굴

▶ <광주 북구> 강00(남, 59세, 정신장애 3급)

- 부모 사망 후 정신적인 지지체계 없이 오랜 기간 홀로 생활한 중증 장애인, 노숙생활로 동사 위험 →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로 입원치료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경기 시흥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배00(남, 지체장애 1급)

- 25년 전 사고로 인해 바깥출입을 거의 못하여 외부활동 단절로 인한 우울증 호소, 첫째 아들의 이혼에 따른 손자 양육 부담 →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으로 병간호 부담 완화 및 정서적 외로움 경감, 손자에 대한 드림스타트 및 결혼후원금 연계로 교육비 부담 완화

나. 민간자원 발굴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공유데이’

- 관내 미용실, 음식점, 한의원, 정육점 등 자영업자가 자신의 물건이나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 → 저소득 가구에 외식기회 제공, 혼자 손주 4명을 양육하는 할아버지 가구에 월2회 삼겹살 제공 등

▶ <경기 시흥시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월급끝전모으기’

- 지역주민 대상으로 ‘월급끝전모으기’ 등을 통해 약 16,000천원 모금 → 모금액 중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32세대에게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6,600천원)

다. 지역보호체계 구축

▶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 독거노인-초등학교 봉사동아리 연계

- 복지협의체 위원인 초등학교 교육전문가 주선으로 관내 독거어르신과 초등학교 봉사동아리를 연계, 상호 심리·정서적지지

▶ <광주 광산구 투계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우산동 독거노인 우울자살실태조사

- 자살률이 높은 우산동 지역 독거노인 대상으로 우울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0여명의 우울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책 마련

라. 지역특화사업 발굴

▶ <충남 서천군> 마산면 “진료보조 택시바우처”

- 농어촌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버스 승차장까지 40분 이상 도보 이동 필요 → 마산면 협의체가 어르신들 진료를 위한 출타 시 택시비 지원

▶ <서울 금천구 가산종합복지관> G밸리 및 지역상권 공동자원 집중 발굴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G밸리로 대표되는 지역에 밀집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원발굴 등 집중 홍보를 위한 자원개발 민관 TF 별도 구성

다. 회의 및 운영 지원

□ 회의운영

- **(운영원칙)** 시·군·구별 매뉴얼 및 읍·면·동 별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되 민관의 자율적 협력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공공의 일방적인 개입 자제
- **(정기회의)** 읍·면·동 별 운영세칙을 정하되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주요안건)** 운영세칙의 마련 및 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방안 논의 및 지원여부 결정, 복지대상자 및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 관련사항, 읍·면·동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관련 사항, 그 외 읍·면·동 내 복지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회의록관리)**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결정내용 기록·보관하고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회의진행)** 원칙적으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 정족수는 **읍·면·동 별 운영세칙으로 사전 규정**
- **(운영지원)** 읍·면·동 주민센터는 회의 개최 장소를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공개 등 관리 지원

[참고] 회의록 양식

회 의 록		결재			
		담당	팀장	위원장	위원장
회의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주관	소속 성명	직위	회의기록	소속 성명	직위
참 석 자	- 위원정수 00명 중 00명 참석				
회의내용	1. 전기 회의내용 조치결과				
	2. 안건토의				
	3. 의결내용 및 조치사항				
	4. 기타토의 및 건의사항				
회의기록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확인날인	

라. 활성화

□ 교육 및 워크숍

○ **(필요성)** 민관협력 사업 참여기관,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참여동기를 유지·강화에 유용

○ **(운영방향)** 교육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수행 단계별로 심화된 교육 필요, 워크숍은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공유 및 신뢰형성을 위한 유대관계 조성 등에 유리

-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교육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과정 구성 사례(예시)

- **초기단계** : 전문가 초빙 듣는 교육 (지역 내 또는 외부 기관 교육 참여)

• 전문가 초빙 듣는 교육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 사회복지 민관협력사업의 필요성·방법, 사회복지 민관협력사업 추진의 효과적인 사례 등

• 실제 참여자로부터 듣는 교육 : 주민참여 또는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일어난 지역 또는 마을, 주민의 변화사례와 경험, 참여자의 성취감·보람 등

- **중기단계** : 민관협력·주민참여 선진지역 견학

• 선진지역의 활동사례, 민관협력·주민참여 사업 전·후의 비교를 통한 변화사례, 민관협력·주민참여 경험자의 경험사례 및 활동방법 등

* 지역현황 및 자원분포, 생활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지역 통합사례회의, 워크숍, 의제발굴·계획수립·모니터링·평가 등 실질적인 민관협력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피력 및 청취를 통한 경험 교육

- **성숙 및 심화단계** : 자기사례발표와 토론을 통한 심화 및 체득 유도

○ 내용

- 복지대상자 특성 및 발굴 방법, 복지제도 종류 및 신청절차, 사회복지관련 용어의 개념

- 지역자원 종류 및 특성, 발굴 방법

- 복지사업 기획 및 운영 기술, 퍼실리테이션, 네트워크 기술

- 사회보장 정책, 지역복지 동향 등

□ 홍보

○ 사업홍보의 기능

- 첫째, 주민의 참여동기 유발 및 참여문화 확산
- 둘째, 지역주민·기관·단체·기업 등의 후원과 자원봉사 등 사회적 재원을 할당받아 수행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설명의 책임 이행

○ 홍보의 내용구성

- 지원사례(도움받은 지역주민, 도움을 주거나 민관협력에 참여한 기관·단체 관계자 사례)
- 협의체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화와 사회적 성과
- 전시성 홍보, 산출량 위주의 홍보는 지양
- 지원대상 이웃의 자존감과 인격적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그 외 활성화방안

○ 신분증명 및 임무 수행 지원

- 신분증, 명함, 명찰, 단체 활동용 조끼, 직원배지 등 배부로 위원들의 지위 표시
- 안내문, 방문자 스티커, 상담카드 등 배부

○ 활동에 대한 예우

- 시·군·구청장 감사서한 발송, 활동 우수자 칭찬게시판 운영, 표창 수여 등

○ 활동비 지원

- 일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필요

* 충남 아산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시 발굴 가구 당 20천원 활동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비교

구 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보장서비스’로 명칭 변경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1. 협의체 구성·운영의 추진배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배경 설명	- ’05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정배경에 대한 설명 보완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변화 <표> 제시
2. 협의체 구성·운영의 목적 및 근거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 규칙의 내용 적시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규칙 법적 근거 <표> 제시 (신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 운영체계 변화 <표> 제시 (사·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복지위원)
		(신설) 라. ’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 대표협의체 구성·운영	가. 대표협의체 구성 원칙 - 대표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가. 구성 원칙 - 필요성의 원칙 삭제
	나. 대표협의체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위원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위원수 확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40인 이내로 구성 (신설) -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결격사유 해당 유무 확인 내용 추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 위원임기는 지자체 조례로 연임 가능여부를 규정하도록 위임
	라.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임기 - 해당지자체의 장이 당연직 공동 위원장이 되며, 민간부문의 공동 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토록함	라.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임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내용 개정
		(신설) 마. 회의 운영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회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내 - 시·군·구 복지분야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 현황 <표> 제시
2.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신설) - 실무협의체 목적 추가
	가. 구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가. 구성의 원칙 - 필요성의 원칙 삭제
	나. 위원 구성 및 선출 - 민간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실무 분과의 구성원들 합의에 의해 분과별 2인 이내 추천과 그 외 영역은 공모를 통해 선출 -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필요한 자원 등을 기타 연계 영역의 실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나. 위원 구성 및 선출 - 민간부문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대표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기타 관련분야 영역에서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필요한 자원·서비스 발굴·연계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사람 등을 기타 관련 분야 영역의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분야의 위원 위촉에 대해 수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 -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역의 인적자원 현황을 고려하여 연임 또는 연임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여 활용	다. 위원 임기 -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자체 조례로 연임 가능여부를 규정하도록 위임
	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라. 위원장의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신설) 마. 회의 운영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개회에 대한 사항 추가
3. 실무분과 구성·운영		(신설) 가.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신설) 라. 회의 운영 - 실무분과 회의 소집 및 개회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 참고자료(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추가)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1.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가. 기능 및 운영의 원칙 나. 주요기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가. 주요기능 - 원칙 삭제(1.협의체 개요에 포함)
	다. 주요역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역할 명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시·군·구 역할 제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사업 예시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표에 사업 및 내용 명시	나. 주요 역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목적 및 역할을 수정·보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시·군·구 역할(예시) 내용 수정·보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수행(예시) 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표)을 「사회보장급여법」 내용에 맞추어 수정·보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p>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p>	<p>나. 회의 운영 -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p>	<p>나. 회의 운영 - 삭제(1장 회의 운영 내용에 포함)</p>
	<p>라. 사무관리 - 사업자 등록,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장부의 비치, 기타 사무 내용 명시</p>	<p>다. 그 밖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법」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 사업자 등록의 법적 근거 명시, 예산 편성시 법적 근거 마련 명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p>
	<p>마. 상근간사 - 간사의 신분 및 처우 중 간사의 보수는 7급 3호봉 또는 전임계약직 라급 상당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재계약시 매년 1호봉씩 가산</p>	<p>라. 협의체 소속 직원 채용 및 배치 - ‘직원’으로 용어 변경</p> <p>(신설) (4) 직원의 신분 및 처우수준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예산지원 근거 명시, 유급지원 선발 배치 안내 - 직원의 신분을 고려,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관련,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기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기준 적용 추가 - 직원의 보수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 - 「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내용에 따라 '12.1.1. 이전 협의체 근무의 간사의 근무경력 인정 - 직원 보수규정 관련법 명시 및 봉급 및 호봉획정, 수당, 퇴직금 사항 기입</p>
		<p>(신설) (5) 직원의 채용방식 - 공개채용 내용 구체적 명시</p> <p>(신설) (6) 복무규정 -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시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내용 적용에 대해 명시</p>

구 분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안(예시) 추가 <p>(9) 기타사항의 모임참가 시 사전 보고 후 승인 규정 삭제</p>
		<p>(신설)</p> <p>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사례 (분야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 기능강화 분야, 복지계획 등 정책 심의·제안 분야,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발굴 분야, 동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분야, 지자체 지원 및 협력 분야
		<p>(신설)</p> <p>바. 협의체 운영관련 그간의 유권해석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격, 상근간사 근로계약 권한, 상근간사 급여의 호봉 가산 근거, 간사 경력 인정,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운영보조금 지원,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 기부금품 모집 가능 여부, 시·군·구 조례 제정 범위 등에 관한 질의 및 해석 사례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1. 계획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배경, 추진경과,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계획 수립기간, 계획 수립절차, 주요 내용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추진경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계획수립기간 및 제출시기, 계획 수립절차, 주요내용 등 개정
2. 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시·도 지역사회복지 계획 절차 및 내용 그림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을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개정
3. 계획 평가	<p>3. 관련 법령 내용「사회복지사업법」 명시</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목적, 평가 유형 및 방법, 평가 주체 및 역할, 평가 결과의 활용 - (1)타당성 평가, (2)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성과평가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4. 계획 변화		(신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계획 변화 내용(표) 추가
V.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2. 평가 틀의 구성	가. 평가방법 - 평가주체는 협의체 대표 및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관련 평가 위원회를 둠 - 평가시기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통상 1년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이 바람직	가. 평가 방법 -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 필요성 추가 - 협의체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의 필요성 추가
V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신설) 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추진배경, 개념 및 성격, 목적 및 기능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구성방법 및 규모, 조직 및 임기, 시·군·구협의체와의 관계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기본방향, 주요기능, 회의 및 운영 지원, 활성화